

인사위원회 규정



주식회사 티와이엠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내인사제도에 관한 개선사항을 입안 건의하며 직원의 인사 처리를 심의함으로써 인사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의무) 위원회의 각 위원은 인사제도의 개선에 열의와 노력을 다하고 심의에 공정을 기하며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 (구성 및 임명)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임원 및 간부 중에서 대표이사가 명한다.

④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임원으로 한다.

제4조 (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대표하여 회의전반에 걸쳐 총괄의 책임을 진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하고 심의를 위한자료를 준비제공한다

제5조 (소집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 (의결방법) 위원회는 재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부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.

① 직원의 상벌

② 직원의 승진 (5급 이상)

③ 채용시 전형방법 및 절차

④ 해외주재원의 선발

⑤ 정년해당자의 계속근무

⑥ 제수당의 신설 및 폐지

⑦ 상여금의 지급기준

⑧ 퇴직자의 포상가급

⑨ 기타 대표이사가 심의를 지시한 사항

제8조 (요청설명) 위원회는 심의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변호 및 제소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일 때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특정 징계사항에 관계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③ 전항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제11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의결된 사항에 관해 즉시 회의록(별지서식 제 1호)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74년 5월 20일부터 제정 실시한다.
2.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